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141)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상훈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골목상권은 대부분 12m 이하의 이면도로에 활성화 되어 있고 노래연습장,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들이 머무를 공간이 필요합니다.

□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같은 골목에 위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 용도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고 낙후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